

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5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2012.04.01부터 재단법인 대산문화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, 2020.03.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, 2차(청소년 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
- 다.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 문화교류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.03.31.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청소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
- 현 위탁법인은 세계문화의 교류사업, 창작문화 연구지원 및 장학 사업, 청소년 리더 육성사업 등 28년간 꾸준히 공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,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
- 지난 3년간 청소년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보고조사 및 설문조사를 시스템화하여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,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추진
-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 이해 교육활동
- 기타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, 2층
- 시설규모 : 915㎡
- 주요시설 : 강당, 세미나실, 사무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학부모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년(2020.4.1 ~ 2022.3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767백만원('19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440백만원, 운영비 413백만원, 사업비 914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석상우 (☎2133-4113)